

충청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농지취득지원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3년 12월 17일

나. 회부일자 : 1993년 12월 17일

3. 제안이유

- 신경제 5개년계획에 따라 '96년도에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할 경우 개인간의 거래분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부담이 일시에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현행 검인계약서 사용시 적용되는 감면율을 점진적으로 현실화 하기 위한 1단계 방안으로 '94년도에 시행할 경감율을 현행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30으로 축소 조정하는 것임.

4. 주요골자

- 동조례 제3조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30"으로 개정

5. 검토의견

충청북도 검인계약서 제도실시 및 농가의 농지취득지원을 위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현행 검인계약서 사용시 적용되고 있는 감면율에 있어 당해 토지와 건축물 계약서상 금액에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40을 감면해주고 있는바

이에대해 '94년도에 시행 할 감면율을 100분의 30으로 축소 조정 하고자 하려는 내용으로서

이는 신경제 5개년계획에 따라 '96년도부터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 하게될 경우 개인간의 거래분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일시적인 세부담을 점진적으로 현실화 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승인하여 줌이 타당한것으로 사료됨.

6. 첨 부

- 충청북도 검인계약서 제도실시 및 농가의 농지취득지원을 위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